

대한민국 재외선거 - 이렇게 합니다.



제공일자 2010. 10. 27.

총 1면

www.nec.go.kr


☎82-2-503-0648

FAX82-2-504-5350

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 - 정치자금 기부금지

- 누구든지 대한민국 「정치자금법」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때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되고 그 제공된 금품 등은 몰수됩니다.

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, 국내·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, 누구든지 국내·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누구든지 업무·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아울러, 정당 등을 포함한 법인·단체나 일반 재외국민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없습니다.



**단체의 정치자금
기부 관련 법원판례**

OO고등학교 동창회장 △△△가 동문인 국회의원 후보자를 후원할 목적으로 그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에 동창회비 1백만원을 지급한 행위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위반됨
(광주지방법원 2004. 10. 7. 판결 2004고합336)

<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(www.nec.go.kr) >

어진 자를 뽑아 바른 **정치**를 하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**편안**하게 되나, **그른**

자를 뽑아 **정치**를 잘못하면 **근심과 걱정**으로 지내게 된다

[天下憂樂在選舉]

출처 : 조선후기 실학자 최한기 선생